

아산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의회



###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경 의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애 의원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영 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근 의원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의상 의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수)까지

#### 나. 의견 제출 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3) 서면, 우편, 전자우편(pys9799@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 조례 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